

편입학시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5조에 의한 편입학, 학사편입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입학 자격 및 학점인정)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2년, 3년)졸업 및 대학교 2년 이상 수료 또는 졸업자에 한 한다.<개정 2007.09.01>

② 편입학 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교)에서 65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하여 일괄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08.09.01>

③ (삭제)<개정 2007.09.01>

제3조(교과과정 이수) ① 편입학한 동일 학년과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학점인정 신청에 의한 승인 전공학점 및 과목 이외에 3, 4학년에 편성된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점을 총 6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7.09.01><개정 2008.09.01>

② 전공과목이 저학년에 개설된 과목이라도 학부(과)의 전공특성에 따라서는 학부(과)장의 지도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09.01>

③ 편입학자의 수강신청은 입학학기에 한하여 19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09.01>

④ 학사 및 일반 편입학생은 교양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⑤ 편입학자의 경우 전공과목은 전공 인정학점 이외에 40학점 이상을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고, 잔여학점 중에서 학부(과)장의 지도에 따라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에 필요한 최소 전공 학점은 전적대학교 전공인정 학점 포함 4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09.01><개정 2008. 09.01>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